

울산지방법원 2022. 10. 12 선고 2020가단1202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효섭, 박민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8. 3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22.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/11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. 5. 13. 접수 제67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

원고는 2017. 5. 22. C와 제주시 D 지상에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공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C에게 공사대금으로 437,960,000원을 지급하였다. 그런데 C이 위 공사의 50%를 완공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여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. 따라서 C은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292,500,000원(= 계약금액 585,000,000원 x 50%)을 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

C은 채무 초과와 상태에서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.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위 협의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

갑 제13, 16, 22, 23, 24, 26, 29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F이 도급인의 지위에서, C이 G의 대표자로서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① 원고와 F이 피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형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,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H이었으나 H이 다른 채무 문제로 자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사실, ③ C이 건물신축과 같은 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, ④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조는 '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'고 정하고 있는데,

H이 위 계약서의 별첨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'G H' 명의로 단독 서명한 사실, ⑤ 원고, F 및 H이 2018. 6. 18.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'공사 포기 각서'와 '유치권 행사 포기 각서'를 작성하면서 시공사 명의로 'G(C, H)'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, C이 위 각서들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, H이 단독으로 원고 측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실, ⑥ F이 C과 H을 사기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, 'H과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은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본건에 관여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'는 이유로 C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C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공사도급인으로서 계약에 관여한 원고 및 F과 수급인 측으로서 관여한 C 및 H 모두 H을 위 공사계약의 단독 수급인으로 삼는 것에 의사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달리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판사 박종열

별지

부 등 산 목 록

1. 울산광역시 남구 대 253.7㎡

2. 위 지상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
1층 110.67㎡

2층 87.21㎡

지하 58.41㎡

